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(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) 개정 안내

<아동권리과, '22.1.7.(금)>

□ 개정 배경

○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중 고아가 아닌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(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제3항)를 받아야 하나,

- 법원의 허가절차 진행 시 그 처리기한이 장기화 되는 경우 보호아동의 법률행위 등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**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**

□ 개정 경과

○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발의 (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의원 대표발의, '21.9월)

* 관계부처 및 기관, 지자체 의견조회(10.1~10.11, 10일간) : 별도 의견 없음

○ 국회 본회의 의결('21.12. 1) → 공포('21.12.21) → 시행('22. 3.22)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**법원은**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**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**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**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**(법 제3조제4항 신설)

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

② 수술, 입원·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

③ 입학,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

□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

○ **(법원행정처)** 각 지방 가정법원에 개정사항 안내 및 개정배경에 따른 **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**

○ **(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)** 각 시설에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사항 안내

참고1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후견인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3조(후견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 1.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. 수술, 입원·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. 입학,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

참고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제도 개요

□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제도 개요

○ 제도 연혁

-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('61.8)
-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('00.1월)

* 정의규정 신설,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, 후견인 결격사유·지정취소 등 규정

- 국민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('12.10월)
- 보호시설의 종류(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) 추가('17.3월)

○ (법적근거)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

○ (적용범위) 아동거주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청소년쉼터,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

□ 후견인 및 지정절차

○ (후견인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**고아**는 **보호시설의 장**(당연직),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·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**고아**는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**지자체의 장이 지정**

- ③ 고아가 아닌 경우 ①, ② 준용하되 법원의 허가 필요

○ (후견인 지정절차)

	②, ③	②, ③	③	①, ②, ③
<절차>	**후견인 지정 신청** ⇨	**후견인 지정** ⇨	**가정법원 허가 신청** ⇨	**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 및 공고(15일)**
<주체>	시설장 등	시군구청장	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	보호시설의 장 시군구청장
<제출서류>	신청서	지정통보서	지정통보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	부양의무자 확인공고서